

##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점 확보 경쟁과 동아시아에 대한 함의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 · 해양영토연구센터장)

북극해 해빙과 함께 북극항로와 북극해 자원에 대한 관심이 북극해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는 북극점까지 또는 이를 넘어서 자국의 대륙붕 확장을 꾀하고 있다.

북극점을 포함한 북극해 대륙붕에 대한 지나친 확보 경쟁은 북극해 지역 내 평화에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 특히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공격적 태도가 북극해에서 재연될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북극해에서의 연안국들 간의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북극해 경제 활동(항로, 자원개발, 해양플랜트, 항만개발 등)에 대한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며, 한·중·일 간에 다투고 있는 대륙붕 문제에 미치는 잠재적 함의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해에서의 군사적 갈등과 이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미국과 캐나다 등의 주도로 추진될 때 러시아와 많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제재 동참 여부를 놓고서 어려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9.26.)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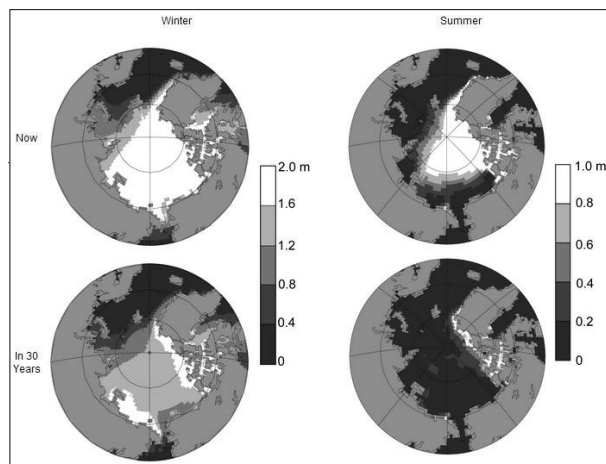
## 목 차

1. 북극해 개관
2. 북극해 해양경계획정과 북극점 대륙붕 확보 경쟁
  - 가. 북극해의 해양경계 획정 지역과 미획정 지역
  - 나. 200해리 이원 북극해 대륙붕 연장 방법
  - 다. 북극해 연안 국가들의 대륙붕 연장 신청과 북극점
  - 라. 러시아의 북극해 군사력 강화
3. 맺음말
  - 가. 협의를 통한 해양경계 획정 문제 해결
  - 나. 북극점을 포함한 북극해 대륙붕에 대한 지나친 확보 경쟁이 지역 평화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
  - 다. 한국에 대한 함의

## 1. 북극해 개관<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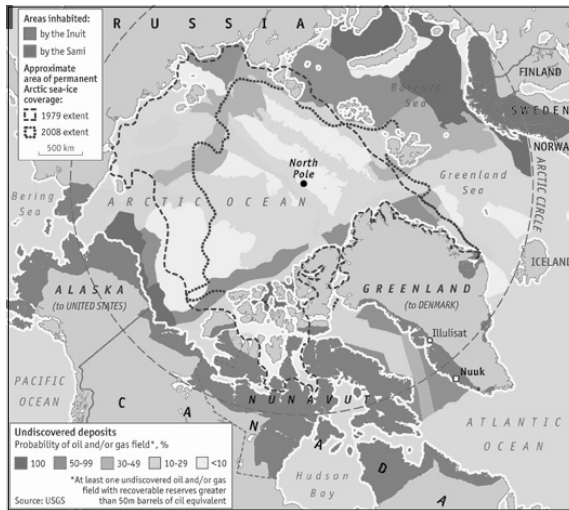
- 북극과 북극해는 지구 표면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음
  - 북극은 지구 표면의 약 6%를 차지하는데, 북극의 범위 구분에 대해선 ① 북위 66°선 이북, ② 평균기온 10°C 등온선, ③ 수목한계선의 북쪽 지역(평균기온 10°C 등온선과 대체로 일치), ④ 바다의 결빙 여부와 같이 다양한 구분 기준이 있음
  - 북극해는 북극권으로 둘러싸인 바다로, 전체 해양의 약 2.8%를 차지하며, 평균수심이 1,200m, 전체의 70% 정도가 수심 1,000m를 넘을 만큼 깊은 바다를 형성
  -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북극해 운항 선박지침은 그린란드 쪽에선 북위 67°03'09", 베링 해 쪽에선 북위 60° 이상 북극권 바다를 북극해로 봄
- 북극해의 해빙은 북극항로 이용과 북극 자원개발에 대한 기대로 인해 지구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국가들의 관심이 지대함(<그림 1>)
  - 북극해는 평균기온 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해빙 현상을 보이며, 2012년 9월 북극해 얼음면적이 관측 이래 최소 상태를 보임
  - 미국 해양대기관리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 의하면, 1979~2000년까지 북극의 얼음 면적이 10년마다 2.2%씩 감소하였으며, 여름철 북동항로와 북서항로가 동시에 열린 현상은 마지막 빙하기였던 약 125,000년 전 이후 처음으로 알려짐

<그림 1> 북극해 얼음 면적: 겨울과 여름<sup>2)</sup>



- 북극해에는 방대한 양의 미발견 석유 및 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그림 2>)
- 원유 13%(900억 배럴), 천연가스 30%(47조 입방미터), 액화 천연가스 20%(440억 배럴)가 북극해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sup>3)</sup>

<그림 2> 북극해 석유 및 가스 자원 분포<sup>4)</sup>



- 북극해 자원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 모두 압도적으로 많으며 미국(알래스카)이 뒤를 이음(<표 1>)<sup>5)</sup>

<표 1> 국가별 북극해 자원 매장량

국가	석유(%)	천연가스(%)
러시아	41	70
미국(알래스카)	28	14
덴마크(그린란드)	18	8
캐나다	9	4
노르웨이	4	4

**북극해의 해빙으로  
북극항로 이용과  
북극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 러시아 측 자료에 의하면 북극지역 전체 석유 탐사 자원량의 41%, 천연가스 탐사 자원량의 70%가 러시아 북극지역에 매장
- 지금까지 61개의 대형 석유·가스 매장지가 북극권에서 발견되었으나, 이 중 15개는 생산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며, 61개 매장지 중 43개가 러시아에 위치하고, 이 중 35개가 서부 시베리아 분지에 위치(33개가 가스전, 2개가 유전)

향후 이 지역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국가들은  
더 많은 해양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전망

- 러시아의 로즈네프트(Rosneft)는 북극해 대륙붕 유전개발을 위해 메이저 석유회사와 협력, 바렌츠 해, 카라 해, 람테프 해 등에서 탐사와 시추활동 중
- 러시아는 최근 야말반도 등 서부 지역 중심의 개발에서 베링 해, 동시베리아 지역으로 개발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추세임
- 북극해의 해빙이라는 자연환경 변화 및 풍부한 자원의 매장은 향후 이 지역에서 인간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국가들은 더 많은 해양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것임을 시사

## 2. 북극해 해양경계획정과 북극점 대륙붕 확보 경쟁

### 가. 북극해의 해양경계획정 지역과 미획정 지역

- 해양경계획정 지역
  - 미국과 러시아 간 베링 해와 북극해, 러시아와 노르웨이 간 바렌츠 해, 캐나다와 덴마크 간 한스 섬을 제외한 배핀(Baffin) 만, 덴마크(그린란드)와 노르웨이 간 북극해에는 모두 양자 간 협정에 의해 해양경계가 획정되어 있음
- 해양경계 미획정 또는 분쟁 지역
  - 미국과 캐나다 간 보퍼트 해, 러시아와 캐나다 간 북극해, 캐나다와 덴마크(그린란드) 간 북극해, 러시아와 노르웨이 간 북극해 일부는 해양경계가 미획정 상태임

### 나. 200해리 이원 북극해 대륙붕 연장 방법

- 현재 북극점을 두고서 자국의 대륙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들은 러시아, 캐나다 및 덴마크임
- 200해리 이원으로 대륙붕 연장 방법
  -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 지역의 해저(Sea-Bed)와 하층토(Sub-Soil)를 대륙붕이라 함<sup>6)</sup>
  - 200해리 이원으로 대륙붕을 연장하는 방법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그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는데, 연안국이 연장하고자 하는 대륙붕에 대해 조사한 과학적 정보를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sup>7)</sup>)에 제출하고, CLCS가

심사를 거쳐 권고결정한 것을 바탕으로 확장할 수 있음<sup>8)</sup>

- 북극해에는 거대한 해저산맥인 로모노소프 해령이 러시아 연안에서 그린란드와 캐나다 사이의 연안까지 뻗쳐 있음(<그림 3>)
  - 로모노소프 해령은 러시아의 뉴 시베리안(New Siberian) 섬에서 캐나다의 엘즈미어(Ellesmere) 섬까지 1,800km에 걸쳐 있으며, 해령의 폭은 60~200km이며, 해저에서 3,300~3,700m 솟아 있음
  - 미국 지질조사국은 9백억 배럴의 석유와 1,669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북극해에 있으며, 기타 광물자원을 제외한 석유와 천연가스만 17.2조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sup>9)</sup>

<그림 3> 북극해 대륙붕 형태<sup>10)</sup>



#### 다. 북극해 연안 국가들의 대륙붕 연장 신청과 북극점

- 북극해를 직접 접하고 있는 5개 연안국, 즉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및 덴마크(그린란드)는 모두 북극해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한계 확장을 추진(<표 2>)
  - 미국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의 찬반 의견대립으로 인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장래 협약 비준 후 CLCS에 정보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륙붕 정보 수집활동을 벌임
  - 2014년 9월 현재 CLCS에 대륙붕 연장신청을 한 74건 중 8건의 정보가 북극해 연안 4개국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북극해 연안국들이 대륙붕 확장에 대해 매우 적극적임을 시사
  - 다만 북극해 연안국이 인접한 북대서양 등을 제외한 북극해에 대한 직접적 정보 제출은 러시아와 노르웨이가 제출한 2건만 해당

북극해를 접하고 있는  
5개 연안국은 모두  
북극해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한계  
확장을 추진

러시아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 확장을  
위한 정보를 CLCS에  
가장 먼저 제출

- 이 중 러시아의 2001년 정보 제출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정보들을 포함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노르웨이의 정보 제출에 대해서는 CLCS가 심사 결과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권고결정을 하였음
- 캐나다는 2013년 12월 북극해 부분의 대륙붕 확장을 위한 예비정보를 제출

〈표 2〉 북극해 연안국의 CLCS 대륙붕 확장 신청 현황<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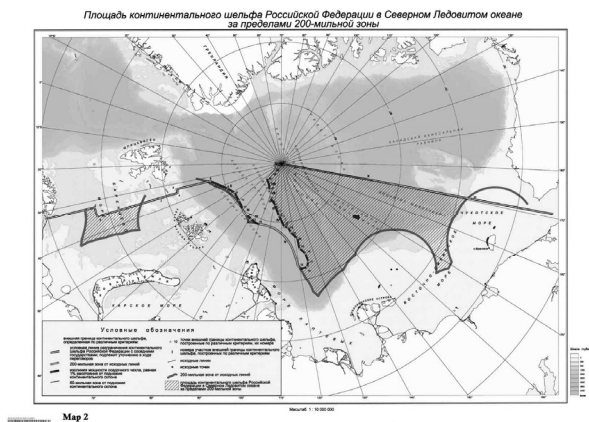
국가	신청	권고결정	신청지역	비고
러시아	2001.12.20	2002.6.27	북극해, 오호츠크해	정보부족 이유 재신청 결정
	2013.2.28		오호츠크해	소위 미구성 단계
캐나다	2013.12.6		대서양	소위 미구성 단계
	2013.12.6		북극해	예비정보
노르웨이	2006.11.26	2009.3.27	북동대서양, 북극해	신청 내용 대부분 수용
	2009.5.4		Bouvetøya 및 Dronning Maud Land	소위 미구성 단계
덴마크	2009.4.29		페로제도	소위 구성
	2010.12.2		Faroe-Rockall Plateau	소위 미구성 단계
	2012.6.14		그린란드 남부대륙붕	소위 미구성 단계
	2013.11.26		그린란드 북동대륙붕	소위 미구성 단계

- 러시아는 2001년 200해리 이원 대륙붕 확장을 위한 정보를 국가들 중 CLCS에 가장 먼저 제출하였음(<그림 4>)
- 과거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해 이른바 섹터이론을 주장하였지만 이 이론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는데, 이 이론 자체가 해양법협약을 비롯해 국제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200해리 이원에 대해서는 CLCS의 권고결정을 받아서 한계를 확장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임
- 현재 러시아는 북극점까지 이르는 대륙붕 정보 수집을 거의 마쳤으며, 2014년 중으로 CLCS에 신청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함
- 러시아는 북극해 대륙붕 확장과 관련해서 로모노소프 해령 및 알파/멘델레프 해령을 해저고지로 간주하여, 북극점을 포함하는 350해리 이원까지 대륙붕을 확장하고자 함
- 2001년 이러한 취지의 정보를 제출했을 때 노르웨이는 해양분쟁은 존재하지만 CLCS의 심사에는 동의하였으며, 미국은 알파/멘델레프 해령은 해양산맥이며 로모노소프 해령은 어느 국가의 자연연장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러시아의 수정정보 제출에 로모노소프/알파/멘델레프/가젤 해령에 대해 어떠한 정보를 담고, 또한 섹터이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에 대한 여부와 북극점을 포함하는 정보는 러시아가 가장 앞서 제출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캐나다와 덴마크 등 주변국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 주목
- 러시아는 이미 2001년 정보를 제출하여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수정정보를 제출할 경우 곧바로 별도의 절차 없이 소위원회에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정보 제출 후 빠르면 1~2년 내에 북극점까지의 대륙붕 연장신청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sup>12)</sup>

〈그림 4〉 러시아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한계 확장(2001)<sup>12)</sup>



- 캐나다는 2013년 12월 6일 북극해에서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연장을 위한 예비정보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해양법협약이 캐나다에 발효(2013.12.7)한 지 10년 이내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식 정보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제출한 것임<sup>14)</sup>
  - 예비정보에는 캐나다의 대륙붕이 알파 해령과 로모노소프 해령으로 350해리를 넘어서 확장된다고 지적함으로써, 정식 정보 제출에서는 북극점이 자국의 대륙붕에 속한다는 주장을 할 것임을 시사<sup>15)</sup>
  - 캐나다는 북극해 대륙붕의 정보 수집과 지도 작성을 위해 2014년 2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2014년 8~9월 사이에는 쇄빙선 2척이 로모노소프 해령과 북극점 인근까지 가서 조사활동을 하였음
  - 2014년 8월 28일 보도에 의하면, 스티븐 하퍼(S. Harper) 총리는 러시아의 북극점 점령에 대비해 자국 군대에 방어 명령을 내림
- 노르웨이는 2006년 11월 27일 바렌츠 해의 루프홀 영역, 서 난센 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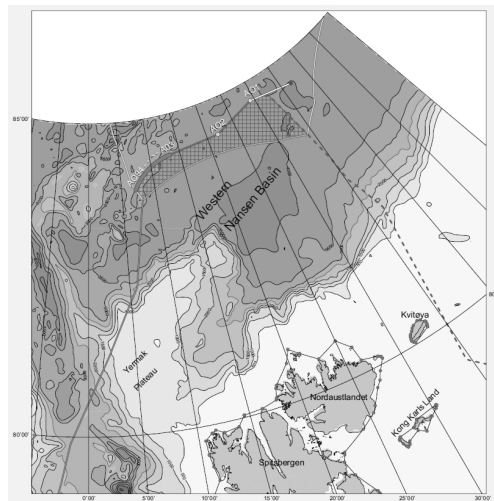
**캐나다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 연장을  
위한 정식 정보의  
제출이 힘들자  
임시방편으로  
예비정보를 제출**

**덴마크는 북극해  
연안국 중 200해리  
이원 대륙붕 확장을  
위해 가장 적극적**

노르웨이 해의 바나나홀 등 세 개의 해역에 대해 CLCS에 대륙붕 연장 신청을 하였음(<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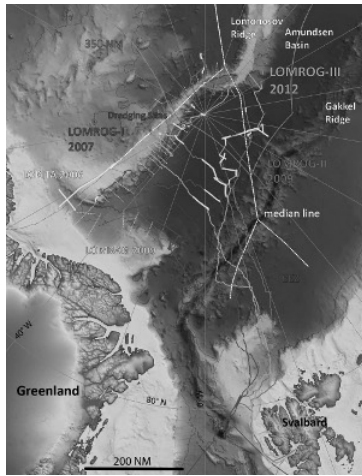
- CLCS는 노르웨이의 신청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는 권고결정을 하고, 노르웨이는 이를 기초로 대륙붕의 한계를 정함
- 노르웨이는 북극점까지 대륙붕 한계를 확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큰 반발을 불러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변국들의 북극해 대륙붕 한계 확장이 가시화되었을 때 확장된 대륙붕에 대한 주변국 간의 경계획정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수 있음

<그림 5> 노르웨이 대륙붕한계 연장 신청 지역 중 서 난센 분지<sup>16)</sup>



○ 덴마크는 북극해 연안국 중 200해리 이원 대륙붕 확장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4건의 정보를 CLCS에 제출하였음(<그림 6>)

- 이 중 2009년 4월 페로제도에 대해 제출한 것에 대해 소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3건은 아직까지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sup>17)</sup>
- 덴마크도 러시아 및 캐나다의 정보 제출에 맞추어 정보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덴마크는 로모노소프 해령이 그린란드 대륙붕의 연장에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북극점을 포함시킬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인데, 포함시킬 경우 북극점은 러시아, 캐나다 및 덴마크 간 치열한 경쟁 지역이 될 것임

〈그림 6〉 덴마크의 로모노소프 해령 조사<sup>18)</sup>

## 라. 러시아의 북극해 군사력 강화<sup>(19)20)</sup>

- 러시아는 지난 1993년에 폐쇄했던 노보시비르스크 군사기지의 재건을 시작했는데, 이는 북극해의 풍부한 자원 확보, 북극항로 및 해양관할권 확대를 둘러싼 북극해 연안국들 간의 경쟁에 대비한 것임<sup>21)</sup>
  - 주변국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의 북극해 군사력 강화에 대해 더욱 경계하고 러시아의 침략적 행동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러시아 제재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캐나다는 러시아의 북극해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으며, 양국이 외교관을 서로 추방하는 등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갈등의 골이 깊음<sup>22)</sup>
  - 노르웨이는 예정했던 북극해 공동 군사훈련을 취소하는 등 러시아와의 모든 군사협력 중단을 선언<sup>23)</sup>

주변국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의 북극해  
군사력 강화에 대해  
더욱 경계하는 입장

## 3. 맺음말

### 가. 협의를 통한 해양경계획정 문제 해결

- 지금까지 북극해 연안국들은 러시아와 노르웨이 사이의 바렌츠 해 해양경계획정협정을 포함한 많은 경우 양자 간 협의를 통해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왔으며, 보퍼트 해를 비롯해 일부 해양경계 미획정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큰 갈등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음

북극해 연안국들 간의  
전쟁은 북극해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와 대응이 필요

## 나. 북극점을 포함한 북극해 대륙붕에 대한 지나친 확보 경쟁이 지역 평화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

- 러시아가 먼저 북극해의 대륙붕 확장을 위한 정보를 CLCS에 제출하고, 덴마크와 캐나다가 뒤이어 제출할 경우 북극점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과열되고 군사적 활동 증가로 인해 역내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다. 한국에 대한 함의

- 북극점과 북극해를 둘러싼 북극해 연안국들 간의 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한국과 동북아시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북극해에서의 이러한 상황전개가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북극해 경제활동(항로, 자원개발, 해양플랜트, 항만개발 등)에 대한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
- 러시아 등이 CLCS에 대륙붕 확장 정보를 제출했을 때, 로모노소프 해령이 자국의 대륙붕임을 주장하는 논거들이 한·중·일 간에 다투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CLCS가 러시아, 캐나다 및 덴마크가 제출한 문서에 대해 과학적 판단만을 통해 심사를 한 결과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이 3국 간 중첩한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200해리 이내에서 3국 간 대륙붕이 중첩하고 있는 한·중·일의 상황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북극해 대륙붕 경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북극해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적 갈등과 이로 인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미국 및 캐나다 등의 주도로 추진될 때 한국 정부는 제재에 동참할지의 여부를 놓고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할 것임

## 주석

- 1) 북극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한국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황진희·엄선희·허소영, 『북극해 활용전략 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 2) 자료: NOAA 및 KMI 정책보고서.
- 3) U.S. Geological Survey, 2008.
- 4) U.S. Geological Survey, 2008.
- 5) [http://english.ruvr.ru/2012\\_08\\_28/Russian-Arctic-resources/](http://english.ruvr.ru/2012_08_28/Russian-Arctic-resources/).
- 6)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1항.
- 7)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지역적 배분에 의해 선출된 21명의 과학자들이 해양법협약이 정한 과학적 기준에 따라 국가들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심사를 하고 권고결정을 함. 홈페이지: [http://www.un.org/depts/los/clcs\\_new/clcs\\_home.htm](http://www.un.org/depts/los/clcs_new/clcs_home.htm).
- 8)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2항 이하 참조.
- 9) U.S. Geological Survey, 2008.
- 10) 자료: [www.wired.com](http://www.wired.com). 그림에서 흰색 실선은 연안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한계이며, 옅은 파란색 부분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 확장 부분임.
- 11) [http://www.un.org/depts/los/clcs\\_new/clcs\\_home.htm](http://www.un.org/depts/los/clcs_new/clcs_home.htm).
- 12) 5명의 소위원회 위원 중 사직한 위원을 대체하는 절차만 밟으며, 이 점에서 소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구성에 장시간이 걸리는 다른 경우와 구별.
- 13) [http://www.un.org/depts/los/clcs\\_new/clcs\\_home.htm](http://www.un.org/depts/los/clcs_new/clcs_home.htm).
- 14) 이 예비정보는 2페이지 문서로 아주 간단하며 지도도 첨부하지 않고 있지만, 북극해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간결하게나마 명확히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음.
- 15) 이러한 예비정보 제출에 대해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CLCS에 구상서를 제출하지는 않고 있음.
- 16) [http://www.un.org/depts/los/clcs\\_new/clcs\\_home.htm](http://www.un.org/depts/los/clcs_new/clcs_home.htm).
- 17) 지금까지 제출한 것들은 모두 북대서양 등지의 대륙붕에 관한 것이며 북극점에 이르는 북극해 대륙붕은 없음.
- 18) [http://a76.dk/greenland\\_uk/north\\_uk/](http://a76.dk/greenland_uk/north_uk/).
- 19) 북극해의 군사력 안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특히 다음 책을 참조: James Kraska and Raul Pedrozo,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3).
- 20) 러시아의 북극해 군사력 활동의 의의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 Pavel K. Baev, "Troublemaking and Risk-Taking: The North in Russian Military Activities," in Elana Wilson Rowe(ed.), *Russia and the North* (University of Ottawa Press, 2009), pp.17-34.
- 21) 세계일보, "러시아, 북극에 군사기지 설치... 북극 영유권 강화 포석"(2014.9.11).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9/11/20140911002311.html?OutUrl=daum>).

- 22) 뉴시스,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캐나다 외교관 추방... ‘외교전 격화’”(2014.4.2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23\\_0012873082&cID=10104&pID=101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23_0012873082&cID=10104&pID=10100)),
- 23) 뉴시스, “노르웨이, 러시아와 모든 군사협력 중단”(2014.3.2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26\\_0012811436&cID=10105&pID=101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26_0012811436&cID=10105&pID=10100)).

#### ❖ 저자 약력

##### ■ 박영길

現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센터장.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수학하여 “국제법상 보편적 관할권: 개념 및 실천적 함의의 재검토”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받음. 2003~2004년 영국 Keele 대학 SPIRE 방문학자, Rhodes Academy 디플로마 취득하였음. 그는 현재 독도의 국제법적 문제, 해양경제계획을 비롯한 해양관할권 문제, 어업문제 및 북극해 거버넌스 등 해양관련 주제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고 있음. 또한 여러 국제학술회의를 주관하고 2014년부터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해양 역량강화프로그램인 여수국제아카데미의 책임을 맡아 주관하고 있음. 그는 연구보고서 외에 여러 논문들을 국내외에 발표해 오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영문 논문들 중에는 다음이 있음: “Different Voices o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in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Vol.3 (December 2011); “Republic of Korea v. Araye” i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6. No.3(2012) (Co-author); “South Korea’s Interests in the Arctic” in *Asia Policy*, Vol.18(July 2014); “Arctic Prospects and Challenges from a Korean Perspective,” in Kimie Hara and Ken Coates (eds.), *East Asia–Arctic Relations: Boundary, Secur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IGI, 2014.8).

기획 및 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